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5
----------	-----

2011년 6월 2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1년 6월 2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전희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개별 법률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행정규칙 및 지침, 그리고 교육청 자체 소관사무 수행상의 필요 등에 의해 각 기관(부서)별로 정보화가 추진됨에 따라
- 총괄적인 정보화 기획·조정기능이 취약하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 투자, 시스템 연동 불가, 보안 취약성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 서울특별시교육청 실정에 맞는 정보화 관련 법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최상의 교육·행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이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 교육감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두며,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등의 사항을 담당함(안 제8조).
-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안 제9조).
- 교육청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안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효율성, 기술적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성용)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과 같은 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475호, 2010. 11. 10, 일부개정) 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1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 2011-79호)를 거친 후 입법예고안 일부를 수정하여 6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 6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임.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세계적으로 정보화 패러다임 구축은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며,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정보화 추진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정보화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타당한 입법이라 할 것임.

다. 주요 사항별 검토

-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각각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총칙 규정으로 별다른 법리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규정임.
- 조례안 제8조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조례안 제15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규정에 따라 교육청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안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의 책임성과 연계성을 확보한 타당한 규정이라 판단됨.
-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정책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정보화 추진 시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한 점에서 타당한 규정이며 특별한 법리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6조와 제17조는 각각 정보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의 감리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8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종합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입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전에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2010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수립한 「행정정보화 종합발전 기본계획」은 동 조례안 제6조의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간주하기에 몇 가지 내용적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정보화 종합발전 기본계획」이 동 조례안의 기본계획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제6조제3항의 필수적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 2011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현재의 사무분장에 부합하도록 업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동 기본계획은 2011년 정보화 사업이 대부분 독자적인 개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동 조례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 및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동 조례안 부칙 제2조가 규정한 시행계획이 서울시교육청 각 실·국별의 정보화 관련 시행계획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용적으로 모호하고, 동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불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교육감의 임기 및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 정보화 정책은 교육감이나 위원의 임기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되어야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반드시 통일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질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 동 조례안은 정보화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설치의 제도화된 절차적 정당성의 보장이라 할 것임.

5. 토론 요지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재검토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재고해야 할 것임.
- 동 조례안에 부합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동 조례안 부칙 제2조는 삭제되어야 됨.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정함 (안 제10조).
- 부칙을 수정함(안 부칙).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35
----------	-----

제안년월일 : 2011년 6월 24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적정성과 적합성을 위하여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정함
(안 제10조).
- 나. 부칙을 수정함(안 부칙).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3.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안 제10조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④ 제3항제2호..... </p> <p>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제출안과 같음) ③ (제출안과 같음) 1. ~ 2. (제출안과 같음) 3. <u>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사람</u></p> <p>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 </p> <p>⑤ (제출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이하 "교육관계자"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2.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
3.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3. 정보의 공동활용
4.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 해소
5.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6. 정보화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7.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8.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교육감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예산정보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지원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4.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5. 정보화 정책 및 주요사업의 사전심의
6. 그 밖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연구정보원장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조정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교육청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안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사업의 범위, 사전 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정보시스템 감리)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효율성, 기술적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관계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의 무흠 결성과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도록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야 하며,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